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⑧>

국회의원 특권 실상: '세비' 분야(2)1)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또 다른 특권은 의원 세비를 법률과는 달리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 의원 급여액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1988년부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 수당법(2조)은 지급액을 국회 '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국회법 제 109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급액이 확정된다. 동 규칙 제2조는 1987년에 이를 다시 국회의장에 위임하도록 변경했다.

입법부 이외의 경우,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으로 결정하며(국가공무원법 46조 4항), 공무원 보수를 새로이 책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관보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 된다(【표 1】 참조). 사법부의 경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2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표 1】 참고).

【표 1】 국회의원과 행정부 및 사법부의 급여결정 체계 비교

	국회의원	행정부	사법부
근거법률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국회의원 수당 규칙 (국회 규칙 : 본회의 의결) * 국회 규정에 재위임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 국무회의 의결)	법관보수 규칙 (대법원 규칙 : 대법관회의 의결, 법원조직법 제17조)
보수액	법률 2조의 별표 등 국회규칙 2조의 별표 등	위 규정 5조 및 별표 1, 3~8, 10~14	- 법률 2조의 별표1 - 보수규칙2조 별표 1
기타	1988년 이후 별표를 개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에 위임(내용은 비공개)	봉급인상시마다 보수규정의 별표 개정, 공개	보수 인상 시 마다 규칙의 별표1 개정 및 공개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1) 본 시리즈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그 실상과 혁파방안」을 시리즈로 재구성하였음.

또한 국회의원은 법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게는 약 160% 많게는 약 540% 더 많이 받는다. 1988년 개정된 법률조항(국회의원 수당법 2, 6, 7조 및 별표 1~3)은 그냥 두고 급여를 인상해 왔으며, 법률에 규정된 액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표 2】 참고) 실제수령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표 2】 법률상의 의원급여와 실제급여와의 차이

(단위 : 원)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A)	실제수령액(B)	과리률(B-A / A)
일반수당	1,014,000	6,464,000	537%
입법활동비	1,200,000	3,136,000	161%
특별활동비	회기 중 일당 12,000	회기중 일당 31,360 (사실상 월 94만)	161% (실수령기준 300%)
입법, 정책개발비	원내대표 협의결정	공개하지 않음	na
상여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없음	연 21,201,920	계산 불가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국회의원 이외의 경우, 행정부는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려면 ‘공무원 보수규정’ 5조 및 별표 1, 3~8, 10~14를 개정해야 한다. 사법부 법관의 경우, 보수를 인상하려면 ‘법관보수에 관한 규칙’(2조, 3조, 별표1, 별표 2)을 개정해야 한다. 외국의 의회는 그 나라의 의원급여 결정방식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국회는 또한 의원 급여제도를 지속적으로 퇴보시켜 왔다. 1980년대 중반, 잘 정비된 의원 급여 제도(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를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퇴보시켜왔다. 1981년 당시 국회의원 세비는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4년에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1987년에 국회규칙개정을 통해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비인상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은 개정당시 의원의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1988년 동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설하고, 금액의 기준(금액 등)은 국회의장이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표 3】 참고). 반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급여제도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수당을 통일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표 3】 국회의원 보수 관련 법률의 개악 추이

	근거 및 법률 개정의 효력	수당종류	금액(원)
1948~72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1973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일반수당 활동비	130,000 620,000
1981	- 의원 급여는 다른 법률과 규칙에 정하지 못함 - 급여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은 개정당시 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음	일반수당 입법활동비(A) 특별활동비	차관급 봉급 차관급 기관운영비 A의 30%
1984	- 급여를 국회 규칙에 규정(공무원보수 조정을 이내) - 급여 관련 법 개정은 임기 중 효력 없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633,500 1,000,000 30%
1987	<u>의장이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u>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
1988 12	<u>‘급여관련 법개정은 임기중 효력없다’ 조항을 삭제</u>	수당 일반활동비 특별활동비	1,014,000 1,200,000 30%
2005	<u>입법 및 정책개발비 신설, 지급기준·절차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 결정</u>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실제 내용은 미공개

*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2013년 총 89억3,700만 원(의원 1인당 3,000만 원 내외)임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원 급여 결정방식 이렇게 개편하자’ 2012년 9월